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 례 안 (4건)

거 창 군

--- 목 차---

의안번호	조례명	쪽수
2023-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과)	1
2023-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	9
2023-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설교통과)	18
2023-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	25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 되어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개정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함
- 나. 위임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5조)
 - 1) 지원절차, 지원방법, 지원중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8. 11.~8.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거창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절차)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 방범대 및 연합대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 3. 지원금 정산서
- 4. 지출결의서
- 5. 방범일지
- 6.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거창경찰

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 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8호, 2022. 4. 26.,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 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 3.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 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 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12조(중앙회·연합회·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 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군·구에 시·<u>군</u>·구자율 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
-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8848호, 2022. 4.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로 본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27호, 2023. 4. 25.제정]

-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 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 · 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

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 · 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비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1.]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 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치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주민생활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방범대"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 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및 지역안전예방 활동 임무를 수 행하고 있는 주민 조직(여성자율방범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2.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3 "외국인 명예경찰대" 란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 범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거창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해 온 자율방범대와 연합회, 외국인 명예경찰대로 한다.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1.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 2 방범초소 개선사업
- 3.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을 중단할 수 있다.
-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요구와 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21.9.29.>

제7조(교육) 군수는 필요시 거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기급을 요하는 경우
-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 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 기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 상으로 한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관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부담 기준을 강화하고 물품 운영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추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사 운영비 정비(안 제48조)
 - 1) 원칙: 사용자부담(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요금을 포함)
 - 2) 예외적으로 예산지출: 보수비, 가구·가전·기계 등의 설치·교체비, 주택관리비
- 나. 물품의 구분 정비(안 제55조, 별표 3)
 -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물품 관리기준 변경사항 반영
 - 가) 소모품 기준에 취득단가 변경: 1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나) 용어 및 문장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58조, 제9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7. 26.~8.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수 있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및 제5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8조(관사 운영비) ① 관사의 운영비(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을 포함한다)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 1. 관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수비
 - 2. 기본생활에 필요한 가구·가전·기계 등의 설치·교체비
 - 3. 화재보험료 등 주택관리비

제55조(물품의 구분) ① 물품의 종류·상태의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관사 운영비)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용, 공작물·구축물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전기·전화·상하수도 요금(1급·2급관사에 한한다) 4. 가스 사용료, 보일러 운영비(1급·2급관사에 한한다) 5. 공동주택 관리비(1급·2급관사에 한한다) 6.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비용(1급·2급관사에 한한다) 7. 주차비, 텔레비전 등의 시청료, 그밖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2급관	제48조(관사 운영비) ① 관사의 운영비(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을 포함한다)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관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수비 2. 기본생활에 필요한 가구·가전·기계 등의 설치·교체비
사에 한한다) 제55조(물품의 구분) ① 물품은 소모성 정도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그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 · 요정비품 · 폐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품종 · 상태구분은 별표 3, 정리구분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물품의 종류·상태 구분(제55조 관련)

1. 물품의 종류

가. 비소모품

- 1)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2) 취득 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

나. 소모품

- 1)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2)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상태 분류기준

- 가. 신품: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물품
- 나.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물품
- 다.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
- 라. 폐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 가. 현금
 - 나. 유가증권
 -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 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 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u>행정안전부장관은</u>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u>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u> 공유 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u>조례로 제정·운영할</u>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 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 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2022.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 I 목적 및 근거
- 1. 목 적
 - □ 공정하고 투명한 물품 관리
 - □ 물품대장과 현품의 일치 및 보관
 - □ 물품의 재활용 촉진. 적기 불용결정 및 신속한 처분
- 2.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8조, 제94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8조
- ~생략~

2. 관리대상 물품

다. 소모품과 비소모품의 관리

- 1) 소모품
- 소모품의 정의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과 같이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소모품의 종류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 ※ 단,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의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어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 (예: 휴대전화기 등)
- 2) 비소모품
-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
-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 50만 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3) 소모품의 수불관리
-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소모품, 희귀 소모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 품 등 주요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에 수불상황 기록관리
-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소모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운용부서에 불출하여 관리중인 소모품에 대하여는 사용공무원이 관리
- 4) 유의사항
-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에 대하여는 재고운용수준을 정하여 관리
- 기록관리가 불필요한 물품까지 소모품대장을 정리함으로써 비능률이 초래되 지 않도록 주의
- ~생략~
- 3) 물품의 상태 확인(물품관리관)
- 불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물품의 상태를 재확인 하여야 함
- 물품의 상태조사
- (필요성) 물품의 상태를 검증하여 활용·사용 여부, 수리사용 가능여부 등을 조사하여, 물품의 상태에 따라 불용대상 물품을 결정하고 그 처분방법을 결정
- (조사시기) 물품의 재물조사, 반납, 불용결정 시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라 실시
- (조사기준)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으로 구분
- ① 신품: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 ②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 ③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가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

지 않는 물품)

④ 페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이 경제적 한계를 초 과하는 물품

□「국유재산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u>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u>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국가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 1. 대통령 관저
 - 2. 국무총리,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 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공관
 -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시설
 - 4.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 또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주거용 시설
 - 5.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
 - 6.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용 시설
 - ③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 ④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 ⑤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보존 여부는 총괄 청이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 ⑥ 총괄청은 법 제6조제2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중 공무원 또는 정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2조(수리비용 부담)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 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관리기관 등이 부담한다.
 - ②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③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④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⑤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민간·공공분야 건설경기 동반 하락과 관내 및 도내 건설업체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건설업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공사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신설함(안 제3조의2)
- 나. 공사의 분리 발주 신설함(안 제3조의3)
- 다. 불필요한 조문 삭제함(안 제12조·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7. 21.~8. 1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군수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이 4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하도급 하려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70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

제3조의3(공사의 분리 발주)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사의 분리 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분리 발주할 수 있다.

제12조 및 제14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의시공품질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이 4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하도급하려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70퍼센트이상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참여 및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
<u><신 설></u>	제3조의3(공사의 분리 발주)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사의 분리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분리 발주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제28조(조례) ① <u>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u>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계약이 확정된다.
 - 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 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u>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u> 히 구분되는 공사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제88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29조제2항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 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8. 10.] [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일부개정]

-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 한 것으로 본다.
-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절 공동계약의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라.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u>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u>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 경상남도의 시·군 지역건설업체 수주 지원실적 평가계획상 평가지표

세부 평가방법

○ 지역업체 참여 비율 명시

(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

- 평가방법 : 조례 반영 유무

○ 분할발주 근거 마련

- 평가방법 : 조례 반영 유무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광고물등을 표시· 설치하려는 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정비함(안 제5조의3·제8조)
- 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을 명시함(안 별표 2)
-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7)
- 1)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횟수별 차등부과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절차 개선함(안 제26조)
 - 1)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조례 개선권고사항 반영
 - 2) 수수료 감면조건이 명확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생략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7조· 제20조
- 2)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55조, 별표 5, 별표 8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7. 6.~7. 2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설치·관리에 관하여"를 "설치·관리에"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운영 등에 관하여"를 "운영 등에"로 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수수 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등
-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 3.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별표 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

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하다.

-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 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 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 제1호 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혂 행

제5조의3(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 ①~② (생략)
-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 는 바에 따른다.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 ① (생략)
-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 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4. (생략)
- 5.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u>운영 등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 ② (생략)
- 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 는 경우
-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 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 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 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 정 안

제5조의3(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u>설치·관리에</u>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 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 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 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인정하 는 광고물등
-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 는 경우
- 3.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 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

- 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 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 4 기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의정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하는 광고물**등**
 - <삭 제>
- ④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수수 료를 면제 할 수 있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 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 라.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 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 대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 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 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 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사.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 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

배를 적용한다.

- 아.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는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계산한다.
- 자.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 장 또는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 차. 제2호가목·라목·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카. 차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차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타.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경우	제1항제1호 및 제1			
1) 입간판 가) 면적 1m ² 이하 나) 면적 1m ² 초과 2m ² 이하 다) 면적 2m ² 초과 3m ² 이하 라) 면적 3m ² 초과하는 면적 0.5m ² 당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m²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3m² 초과 5m² 이하다) 면적 5m² 초과 10m² 이하라) 면적 10m² 초과하는 면적 1m²당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초과 90일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초과인 경우 	제1항제1호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 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 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 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 한 경우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76호, 2022. 6. 10., 일부개정]

-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 3. 광고주
 - 4. 옥외광고사업자
 - 5. 광고물등의 표시 · 설치를 승낙한 토지 ·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하 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3. 삭제 <2016. 1. 6.>
 - 4. 삭제 <2016. 1. 6.>

-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21호, 2022, 12, 6., 일부개정]

-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u>이행강제금의 부과</u> 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과태료의 부과기준은</u>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 1. 위반행위
- 가.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여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 나.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 2. 광고물등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광고물등	이 행 강 제 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m²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
	m'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	

하는 애드벌론

- 1) 연면적 3m² 미만
- 2) 연면적 3m² 이상 5m² 미만
- 3) 연면적 5m² 이상 10m² 미만
- 4) 연면적 10m² 이상
-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 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 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팎
- 1) 연면적 5m² 미만
- 2) 연면적 5m² 이상 10m² 미만
- 3) 연면적 10m² 이상 20m² 미만
-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5) 연면적 50m² 이상
-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띄우는 애드벌룬
-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예보탑
- 2) 교통안내소
- 3) 안내게시판 · 지정벽보판 · 버스 승강장 · 택시승강장 · 관광안내도
- 4)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시장등 이 인정한 편익시설물
- 5)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공공시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설물
-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1) 비행선
-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m² 미만 나) 연면적 3m² 이상 5m² 미만
- 3) 연면적 5m² 이상
-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 20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워을 더한 금액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워 이상 200만워 미만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연면적 50㎡ 초과 면적의 1㎡당 10 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ㆍ지주 이용 간팎에 준함
-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연면적 5㎡ 초과 면적의 1㎡당 5만원 을 더한 금액 미만
-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

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 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 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별표 8] <개정 2021. 12.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 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 라.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 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 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 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

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하다.

- 사. 제2호가목·라목·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기 년 영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 또는 제 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표 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1) 입간판 가 연면적 3㎡ 이하 나) 연면적 3㎡ 초과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 2	이상 80만원 이하 개당 80만원+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 의 0.5㎡당 8	이상 105만원 이하 개당 105만원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 의 0.5㎡당 10만원을 더	이상 135만원 이하 개당 135만원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 의 0.5㎡당 13만원을 더	
2) 현수막 가) 면적 10㎡ 이하 나) 면적 10㎡ 초과		면적 10㎡를		이하 장당 135만원 +면적 10㎡를	

3) 벽보 4) 전단		이상 5만원 이하	의 1m ² 당 20 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만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6천원 이상 6만원	
나. 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 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의3	1 -1	1-1	1 -1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 하인 경우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 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2) 90일 이상 180 일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1년 이상		300만·	원 이상 500만 ⁴	원 이하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마. 법 제16조를 위반 하여 광고물에 허 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